

의안 번호	2586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7.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7. 7.(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6. 7. 15.(수)

2. 제안이유

-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기의 게양·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국기 무상보급 대상자 확대
(안 제5조제2항제5호, 제6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신설)
 - 울산 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신설)
-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7조(시행규칙) 삭제

4. 근거법규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국기의 게양·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 보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 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에 부합함.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국기를 배부해야 함으로 기존 배부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 등에 증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타 구·군 태극기 무상 보급 현황

□ 무상 보급 현황

구 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비 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	○	○	○	○	
장애인	○	○	○	○	○	
한부모가정	○	○	○	○	○	
유공자	○	○	○	○	○	
전입신고자	×	○	○	○	○	
혼인신고자	×	×	×	×	×	

※ ‘전입신고자’ 및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태극기 무상 보급 관련, 현재 5개 구군 조례·규정 없음.

근 거 법 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